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나경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480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나경원의원안) ..	2

I. 개요

1. 나경원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448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나경원의원 등 15인
- (2) 제 안 일 : 2025. 11. 21.
- (3) 회 부 일 : 2025. 11. 2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어린이 집,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및 저출생 문제를 고려할 때 양육 가정에 대하여 보육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비용 등 돌봄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줄 필요가 있음.

이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3학년 이하의 초등학생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등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급한 비용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5항 신설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나경원의원안)

현 행	개정안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제59조의4제3항제1호) ○ 유치원, 초·중·고교 등에 지급한 교육비, 미취학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등 - 세액공제율: 15% ☐ <신 설>	☐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u>취학 전 아동 및 3학년 이하의 초등학생의 돌봄서비스 이용비용 특별세액공제 신설</u> ○ <u>공제대상: 근로소득자가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과제기간 종료일 기준 9세 이하 또는 3학년 이하의 초등학생에 한정)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돌봄 서비스 이용 비용</u> ○ <u>세액공제율: 15%</u> ○ <u>공제한도: 연 300만원/명</u> ○ <u>시행일: 2026년 1월 1일</u> ○ <u>적용례:</u> -법 시행 이후 돌봄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 나경원의원안 2025. 11. 21. 제출(의안번호 14480)

☐ 개정안은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만 9세 이하 또는 3학년 이하의 초등학생에 한정)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

봄서비스 등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 비용 중 일부에 대해 아이 1인당 300만원의 한도에서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공제율 15%).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국민에게 고등 교육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을 통한 학습사회를 구현하고자 거주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각종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임.

먼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연혁을 살펴보면, 1977년 본인의 수업료 등 공납금 지급분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근로학생공제”라는 명칭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1982년 세법개정으로 “교육비공제”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세제 혜택이 확대되어 왔음.

2008년 세법개정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대학생은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은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였고,

고소득층에 대한 과도한 세감면을 방지하고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의료비, 기부금 등과 함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공제율 15%)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2016년 세법개정으로 거주자 본인을 위하여 지출한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및 연 30만원 한도의 현장체험학습비(시행령 개정)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였음.

또한, 2022년 세법개정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최근 2025년 세법개정으로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교를 위하여 예능 교습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중 일정 금액 역시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음.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의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항은 공제대상 교육비를 ①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② 급식비, ③ 초·중·고 교과서대금, ④ 연 50만원 한도의 중·고등학교 교복구입비, ⑤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⑥ 연 30만원 한도의 초·중·고 현장체험학습비, ⑦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 및 대학 입학전형료 등으로 정하고 있음.

□ 개정안들은 아이돌봄서비스 등 돌봄서비스 이용비에 대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부모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대표적인 돌봄서비스는 「아

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로¹⁾,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가구유형 및 소득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2024년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는 118,126가구에 달하는 등 서비스 신청 및 이용가구는 점차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2025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소득 유형	기준 중위소득	시간당 서비스비용		
		합계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1,630원	10,962원 ¹⁾	1,218원
			9,886원	1,744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7,308원	4,872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3,654원	8,526원
라형	150% 초과 200%이하		1,828원	10,352원
마형	200% 초과			12,180원

주1)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중 소득유형이 가형인 가구에 한하여 적용

* 영아 종일제 서비스 기준

[연도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및 이용 현황]

(단위: 가구, 시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이용가구	71,789	78,212	86,100	118,126
월평균 이용시간	87.9	83.1	85.6	88.1

*자료: 여성가족부

뿐만 아니라 성별과 연령을 불문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우

1)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크게 영아종일제 서비스(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 질병감염 아동지원, 기관연계서비스로 구분되

선 추진할 정책으로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지원 확대”가 선정
(25.2%)²⁾되는 등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책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을 세액공
제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실질적인 돌봄비용 지원 효과를 가져와
부부의 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우선 추진할 정책(성별·연령별)]

(단위: %)

구분		초과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제 확산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 지원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지원 확대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	일·생활 균형 인식 확산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강화
전체		5.1	15.7	10.2	25.2	9.3	17.1	11.2
성 별	남성	6.1	17.7	11.3	20.9	10.4	18.7	8.6
	여성	4.2	13.7	9.1	29.3	8.3	15.5	13.7
연 령 별	25세 ~ 30세	6.9	19.7	12.9	26.1	8.0	15.4	7.5
	30세 ~ 40세	6.2	21.0	14.5	24.9	6.7	15.0	9.5
	40세 ~ 50세	5.4	19.1	10.3	23.0	9.5	17.3	12.4
	50세 ~ 60세	5.5	14.9	9.2	24.9	9.7	19.0	12.0
	60세 ~ 70세	4.4	12.2	8.5	27.1	10.4	17.5	12.7
	70세 ~	3.1	8.2	7.0	25.7	10.8	16.9	10.7

* 자료: 여성가족부, “2023년 가족실태조사”, 2024

둘째, 자녀의 양육 과정에서 ①어린이집, 학원 등 기관, ②조부모

2) 「2023년 가족실태조사」, 2024, 여성가족부

등 가족의 도움, ③아이돌보미 등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양육서비스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학원 및 체육시설 등의 수업료 등을 공제대상으로 규정³⁾하고 있을 뿐, 개인양육서비스 이용료는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안은 유사 서비스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음.

셋째, 자녀 돌봄 서비스비용에 대한 부담 경감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⁴⁾이 2016년 1.17명 수준에서 2022년 0.78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4년 0.75명으로 일부 반등하였으나 여전히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므로, 저출생 문제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0.97	0.91	0.84	0.81	0.78	0.72	0.75

자료: 국가데이터처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비용은 2021년 72.1만원⁵⁾에서 2024년 78.9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이 중 교육비 비

3)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만 해당

4) 15세~49세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5) 분석의 편의상 2자녀 가구의 월평균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을 기준으로 비교함.

중은 2021년 44.0%, 2024년 45.6%로 기타 항목을 제외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교육비의 부담이 저출생 문제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자녀 1인당 월평균 자녀 양육비용 지출액]

(단위: 만원, %)

구 분	어린이집 유치원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돌봄비용	기타비용	합계
2021년 (비중)	2.8 (3.9)	5.7 (7.9)	26.0 (36.1)	2.7 (3.7)	34.9 (48.4)	72.1 (100.0)
2024년 (비중)	2.1 (2.6)	5.9 (7.5)	30.1 (38.1)	2.0 (2.5)	38.8 (49.2)	78.9 (100.0)
영유아	7.2	0.0	7.7	5.1	37.0	57.0

*가구의 월평균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을 의미함
 *기타비용: 의복, 장난감, 분유, 기저귀, 기타 육아용품비, 용돈, 의료, 교통, 통신 등
 *돌봄비용: 조부모, 친인척, 비혈연 돌봄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비용: 의복, 장난감, 분유, 기저귀, 기타 육아용품비, 용돈, 의료, 교통, 통신 등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2024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따라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원할 경우, 보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잠재적인 출산 희망가구의 증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다른 지원 제도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간병 서비스, 노인·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운영 중인 상황임.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이

신설되는 경우 다른 서비스와의 과세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다른 서비스들에 대한 공제 요구가 발생할 수 있음.

둘째,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세제·재정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현재 만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50만원 또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있고⁶⁾, 만 7세 이하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원되며, 소득기준 충족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등 다양한 재정지원 제도가 운영 중에 있음. 특히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예산 규모가 제도 도입 이후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고⁷⁾,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별로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85%의 정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⁸⁾을 감안할 때 재정지원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6)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7) 예산규모 (2023년) 3,546억원 → (2024년) 4,679억원 → (2025년) 4,750억원

8) 정부지원율(중위소득 기준별, %): (75% ↓) 85% (120% ↓) 60% (150% ↓) 30% (200% ↓) 15%

[저출생 대응 재정지원 정책]

유형	정책	구체적 내용	예산규모 (2025년)
보육·돌봄 정책	첫만남이용권 (출산장려금)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24.1.1일 이후 출생 아동은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부터는 300만원 지급	3,591억 1,900만원
	아동수당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균등 기회보장을 위해 만 8세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수당 지원	1조 9,587억 3,800만원
	부모급여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 보전	2조 1,351억 2,800만원
	기저귀·분유 지원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 분유 지원	434억 5,300만원
	보육료 지원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유아 단계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적용하여 생애 출발선의 균등 교육 기회 제공	3조 1,020억원 1,3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도모	3조 3,531억 2,400만원
	가정양육수당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취학전 24~8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양육수당 지원	772억 9,200만원

자료: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 해외사례 연구」, 2025.1.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 홍우형

또한 세제지원 제도로는 자녀장려금, 6세 이하 출산·보육 수당에 대한 비과세 등 출산,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현행법 상 출산·양육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

세목	유형	구체적 내용				근거								
소득세	비과세	· 출산·보육수당 관련 급여(6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원) 비과세				소득법 §12								
		·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비과세												
	소득공제	· 20세 이하의 자녀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기본공제)				소득법 §50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소득법 §59-2								
		<table><tr><td>8세 이상 자녀 수</td><td>1명</td><td>2명</td><td>3명 ~</td></tr><tr><td>세액공제액</td><td>연 25만원</td><td>연 55만원</td><td>연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td></tr></table>					8세 이상 자녀 수	1명	2명	3명 ~	세액공제액	연 25만원	연 55만원	연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
		8세 이상 자녀 수	1명	2명	3명 ~									
세액공제액		연 25만원	연 55만원	연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										
<table><tr><td>과세연도 출산·입양 자녀수</td><td>첫째</td><td>둘째</td><td>셋째</td></tr><tr><td>공제액</td><td>연 30만원</td><td>연 50만원</td><td>연 70만원</td></tr></table>				과세연도 출산·입양 자녀수	첫째	둘째	셋째	공제액	연 30만원	연 50만원	연 70만원			
과세연도 출산·입양 자녀수	첫째	둘째	셋째											
공제액	연 30만원	연 50만원	연 70만원											
· 의료비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관련 의료비 중 총급여액 3% 초과액 (연 700만원 한도, 산후조리원 비용(200만원 한도) 포함, 공제율 15%)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관련의료비(공제율 20%) - 난임시술 관련 지출비용(공제율 30%)														
·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 고등학생 이하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소득법 §59-4②										
				소득법 §59-4③										
부가가치세	면세	·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 7천만원 미만 및 가구원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인 가구의 부양자녀 1인당 50만원 ~ 100만원의 자녀장려금 지급 *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소득법 §100-28 ~ §100-31								
		· 유아용 기저귀·분유 면세				소득법 §106								
				· 산후조리원 면세	부가령 §35									

특히 최근(2025.12.) 법 개정을 통하여 6세 이하 출산·보육 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전술한 바와 같이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의 초등학생을 위하여 예능 교습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할 경우 소득세 수입은 2027년 67억원 등 5년간 총 374억원(연평균 7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2027~2031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세액공제 신설 (안 제59조의4)	△67	△70	△74	△79	△85	△374	△7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문 의 처

02)6788-5157